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원의 교원단체 파견 근거 신설 〉

■ 정성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76호)

2026. 4.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교원의 교원단체 파견 근거 신설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정성국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2026. 1. 28.
3. 회부연월일: 2026. 1.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의 수행 등 공적 활동을 해 오고 있는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과 교섭·협의를 해오고 있음.

그런데 교원노동조합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교사의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이 아닌 교원단체는 보수의 손실 없이 고충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교원을 교원단체에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원노조의 근무시간 면제와의 형평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교육의 전문성·공공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교원의 교원단체 파견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원단체가 교원의 전문성 또는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소속 교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된 교원에 대해서는 인사 및 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교원의 파견) ① 교원단체는 전문성 향상 등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 대하여 교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교원단체와 협의하여 그 소속 교원을 교원단체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원단체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나. 검토의견

- 최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 노조법”이라 함)이 개정·시행(법률 제18924호, 2023.12.11.)됨에 따라 교원노동조합의 경우 교원이 근무시간 면제 한도(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8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교육부장관 등과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적용받게 되었음.¹⁾

<조합원 규모별 근무시간 면제 한도(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8호, 2024.11.27., 제정)>

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 한도	연간 사용가능인원
99명 이하	최대 800시간 이내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수 99명 이하 구간의 사용가능인원은 ‘최대 2명’으로, 조합원수 100명~999명 구간의 사용가능인원은 ‘최대 3명’으로 정한다.
100명~299명	최대 1,500시간 이내	
300명~999명	최대 2,000시간 이내	
1,000명~2,9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3,000명~4,999명	최대 9,000시간 이내	
5,000명~9,999명	최대 12,000시간 이내	
10,000명~1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15,000명~29,999명	최대 20,000시간 이내	
30,000명 이상	최대 25,000시간 이내	

* ‘조합원 규모’는 「교원노조법」 제5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에 재직 중인 조합원 수를 의미한다.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① 교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 그러나 「교육기본법」 제15조2)에 따른 교원단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 제11조3)에 따라 교육부장관 등과의 교섭·협의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법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교원을 보수의 손실이나 인사상 불이익 없이 교원단체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노동조합에 도입된 근무시간 면제제도와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이라든 같은 목적의 활동에 대하여 제도적 지원 수준이 차이가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① 「교원노조법」 개정 따른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취지와 개정안의 관계, ② 공무원 파견 제도와의 정합성, ③ 다른 공무원 직능단체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임.

2)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①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①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도입 취지와 개정안과의 관계

□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노사관계 운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의 노동조합 활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써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는 제도라는 특징이 있음.

한편,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직능단체로서 노동조합과는 법적 성격 및 기능이 구별되는 조직임.

따라서 노동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입된 근무시간 면제제도⁴⁾를 근거로 직능단체인 교원단체에 별도의 인력 파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 및 제도 간의 관계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② 공무원 파견 제도와의 정합성

□ 공무원의 파견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⁵⁾에 따라 국가적

4) 근무시간면제제도는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활동(협약·교섭, 노조 유지·관리 업무 등)에 대해 유급처리를 인정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음(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현황과 쟁점」, 2022.6.15.)

5)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구,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등을 목적으로 공무원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공무원이 본래의 직무를 떠나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함을 전제로 운영하고 있음.⁶⁾

한편,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교육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및 교섭·협약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교원단체를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으로 보기 어렵고, 개정안에 따른 파견의 목적이 국가적 사업 수행이라는 공무원 파견제도의 주요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임.

③ 다른 공무원 직능단체 지원제도와 의 형평성

□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조직되는 직능단체로서 정책 건의 및 교섭·협약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는 특정 직렬 또는 직무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다양한 직능단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 역시 구성원의 권익 보호 및 정책 건의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룰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기간·절차, 파견된 자의 인사교류를 위한 신규 채용, 파견된 자의 승진임용,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6) 개정안에 대한 인사혁신처 검토의견(2026. 2.)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단체에 한하여 교원을 보수의 손실 없이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다른 공무원 직능단체에서도 유사한 제도 도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공무원 인력 운영 및 단체 지원 제도의 형평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교원단체에 대한 교원 파견 제도의 도입 여부는 교원단체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공무원 직능단체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다각적인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 신중검토

- 공무원 파견제도의 취지와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원단체로의 파견제도 마련은 신중검토 필요

○ 인사혁신처 : 신중검토

-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는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조직된 단체이며, 교원단체에서 주로 수행하는 업무는 회원인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 후생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과 교섭·협약하는 것임.
- 공무원의 파견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1항에 따라 국가적 사업 수행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본래의 직무를 떠나 있다 하더라도 공무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함을 고려할 때
- 교원단체의 업무가 공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교육공무원의 교원단체 파견이 「국가공무원법」의 국가적 사업 수행이라는 파견의 주요 취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입법 필요

-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교섭·협약권은 근거법이 다를 뿐 동일한 사항임
-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간 최소한의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법에 명시된 교원단체 활동의 진작을 위한 입법이 필요함

○ 사단법인 대한사립학교장회 : 입법 필요

-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는 설립 근거법은 다르나,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적은 동일함
- 교원단체에 「교원지위법」 제11조에서 부여한 교섭·협약권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절차적 요건임

<참고자료>

< 2025학년도 시·도교육청별 근무시간 면제자 운영 현황 >

교육청	산정 조합원수	면제시간 배분합계	근무시간면제자 수(명)				연계 휴직자 ⁷⁾
			소계	2,000시간 (전일)	1,000시간	기타	
서울	16,325	17,200	11	7	3	1	1
부산	5,178	12,000	9	5	1	3	2
대구	4,587	9,000	5	4	1		1
인천	6,165	12,000	7	5	2		1
광주	4,301	9,000	6	3	1	2	1
대전	4,039	7,640	6	3	1	2	1
울산	2,410	4,000	4	1	1	2	
세종	1,621	4,000	4	1	1	2	1
경기	36,806	25,000	22	3	19		
강원	3,722	9,000	7	3	2	2	2
충북	3,680	9,000	7	2	1	4	
충남	5,827	11,500	7	5	2		1
전북	5,638	12,000	7	5	2		2
전남	5,561	10,800	8	4		4	
경북	4,761	9,000	5	4	1		1
경남	7,783	11,500	8	4	2	2	1
제주	1,476	3,968	3	2		1	
합계	119,880	176,608	126	61	40	25	15

자료 : 교육부

7) 「교원노조법」 제5조에 따른 노동조합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며, 그 기간 중에는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봄.

문 의 처
02)6788-5192